|  |  |  |
| --- | --- | --- |
| **일반조세회피방지 관리방법(시행)**국가세무총국 령 제32호<일반조세회피방지 관리방법(시행)>는 이미 2014년 11월 25일 국가세무총국의 2014년도 제3차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였기에 이를 발표하며,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국가세무총국: 왕군2014년 12월 2일**제1장 총 칙****제1조** 일반조세회피방지 관리를 규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이하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세무기관이 기업소득세법 제47조,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이 실시하는 합리적인 상업목적을 갖추지 아니하고 세수이익을 취득하는 조세회피조치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별납세조정을 적용한다.아래의 상황은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경거래 또는 지급과 무관한 조치　　(2) 납세회피, 체납세액 추징회피, 조세포탈, 납세거부 및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혐의 등 세수위법행위.**제3조** 세수이익이라 함은 기업소득세 과세액의 감소, 면제 또는 납부지연을 지칭한다.**제4조** 조세회피조치는 아래의 특징을 지닌다.(1) 세수이익의 취득이 유일한 목적 또는 주요한 목적이며(2) 형식적으로 세법규정에 부합하나, 그 경제실질과 부합하지 아니한 방식으로 세수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제5조** 세무기관은 합리적인 상업목적과 경제실질을 갖추는 유사한 조치를 기준으로, “실질은 형식보다 중요하다”는 원칙에 따라 특별납세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조정방법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 거래에 대하여 재차 타당성을 규정　　(2) 세수상 거래측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해당 거래측과 기타 거래측을 동일한 실체로 간주　(3) 관련 소득, 공제, 세수우대혜택, 경외 세수공제 등에 대하여 재차 타당성을 규정하거나 각 거래측 간 다시 분배 (4) 기타 합리적인 방법.　　 **제6조** 기업의 조치가 이전가격, 원가분담, 피통제외국기업, 과소자본 등 기타 특별납세조정 범위에 속하는 경우, 기타 특별납세조정 관련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기업의 조치가 수익을 받는 소유인, 이익제한 등 세수협정 집행범위에 속하는 경우, 세수협정 집행에 관련된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제2장 입 안****제7조** 각급 세무기관은 업무실정에 맞춰 다양한 데이터 자원, 예를 들어 기업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납세평가, 동일한 기간의 자료 관리, 대외지급 세무관리, 지분양도거래 관리, 세수협정의 집행 등을 응용하여 일반조세회피방지 대상을 지체없이 발견해야 한다.**제8조** 주관세무기관이 기업의 조세회피 혐의를 발견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이하 ‘성’) 세무기관에 단계적으로 보고하여 재검토 및 동의를 얻은 후, 세무총국에 보고하여 입안을 신청한다.**제9조** 성급 세무기관은 세무총국이 작성한 입안신청서의 심사의견을 주관세무기관에 전파해야 한다. 세무총국이 입안에 동의하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일반조세회피방지 조사를 실시한다.**제3장 조 사****제10조** 주관세무기관은 일반조세회피방지 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를 받는 기업에게 <세무검사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제11조** 조사를 받는 기업은 관련조치가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조세회피조치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세무검사통지서>를 수령한 일로부터 60일 내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조치의 배경자료　　(2) 조치의 상업목적 등 설명문건　　(3) 조치의 내부정책과 관리자료, 예를 들어 동사회 결의서, 비망록, 이메일 등　(4) 조치와 관련되는 상세한 거래자료, 예를 들어 계약서, 보충협의서, 대금수취/지급 증빙 등　(5) 기타 거래측과 소통한 정보　　(6) 그 조치가 조세회피조치에 속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7) 세무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자료.　　기업이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기한 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에 연기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비준을 득하고 연기를 할 수 있지만, 최대 30일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주관세무기관은 기업의 연기신청을 접수한 일로부터 15일 내 서면으로 회신해야 한다. 기한을 초과하여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기관이 기업의 연기신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제12조** 기업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세수징수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확정을 진행할 수 있다.**제13조** 주관세무기관이 일반조세회피방지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기업을 위하여 조치를 기획한 단위 또는 개인(이하 ‘기획자’)에게 관련자료 및 증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제14조** 일반조세회피방지 조사 중 기획자, 특수관계인 및 특수관계업무 조사와 관련된 기타 기업으로부터 조사를 위한 증명자료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세무사항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제15조** 주관세무기관은 기업, 기획자, 특수관계인 및 특수관계업무 조사와 관련된 기타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는 경우 현장조사, 조사협조 공문발송 및 공개정보 열람 등 방식을 취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경외 관련자료가 필요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세수정보 교환절차를 활용하거나 외국에 주재한 중국기구를 통하여 관련정보를 조사 및 수집할 수 있다. 경외 특수관계인의 관련자료가 필요한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공증기구의 증명을 제출하도록 기업에 요구할 수 있다.**제4장 안건종결****제16조** 주관세무기관은 조사과정 중 입수한 관련자료에 근거하여, 세무총국의 입안동의일로부터 9개월 내 심사를 진행하고, 기업의 조세회피조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건이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1차 조정된 방안의 의견 및 이유를 작성하고 성급 세무기관에 단계적으로 보고하여 재검토 및 동의를 얻은 후, 세무총국에 보고하여 안건종결을 신청한다.**제17조** 주관세무기관은 세무총국이 작성한 안건종결신청서의 심사의견에 근거하여, 아래의 상황에 따라 진행하여 처리해야 한다. (1) 조정이 되지 아니함에 동의하는 경우, 조사를 받는 기업에게 <특별납세조사 결론통지서>를 발송하고(2) 1차 조정된 방안에 동의하는 경우, 조사를 받는 기업에게 <특별납세조사 1차조정통지서>를 발송하며(3) 세무총국이 다른 의견을 제출한 경우, 세무총국의 의견에 따라 수정 후 재차 단계적으로 보고하여 심사한다.조사를 받는 기업이 <특별납세조사 1차조정통지서>를 수령한 일로부터 7일 내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특별납세조사 조정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조사를 받는 기업이 <특별납세조사 1차조정통지서>를 수령한 일로부터 7일 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주관세무기관이 심사를 거쳐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를 받는 기업의 이의 및 채택되지 아니한 의견과 이유를 성급 세무기관에 단계적으로 보고하여 재검토 및 동의를 얻은 후, 세무총국에 보고하여 안건종결을 재차 신청해야 한다.조사를 받는 기업이 <특별납세조사 1차조정통지서>를 수령한 일로부터 7일 내 이의를 제기하고, 주관세무기관이 심사를 거쳐 확실히 조정방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를 받는 기업의 이의 및 수정 후 조정방안을 성급 세무기관에 단계적으로 보고하여 재검토 및 동의를 얻은 후, 세무총국에 보고하여 안건종결을 재차 신청해야 한다.**제18조** 주관세무기관은 세무총국이 기업의 이의를 고려하여 작성한 안건종결신청서의 심사의견에 근거하여, 아래의 상황에 따라 진행하여 처리해야 한다.(1) 기업이 제기한 이의를 채택하지 아니함에 동의하는 경우, 조사를 받는 기업에게 <특별납세조사 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2) 수정 후 조정방안에 동의하는 경우, 조사를 받는 기업에게 <특별납세조사 조정통지서>를 발송하며　　(3) 세무총국이 다른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세무총국의 의견에 따라 수정 후 재차 단계적으로 보고하여 심사한다.**제5장 분쟁처리****제19조** 조사를 받는 기업이 주관세무기관이 결정한 일반조세회피방지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법률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제20조** 주관세무기관이 결정한 일반조세회피방지 조정방안이 중국 내 이중과세를 초래하는 경우, 세무총국은 통일적으로 조직하여 협조하고 해결한다.**제21조** 조사를 받는 기업이 중국 세무기관이 결정한 일반조세회피방지 조정이 국제적으로 이중과세를 초래하거나 세수협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한 과세라고 판단하는 경우, 세수협정 및 그 관련규정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제6장 부 칙****제22조** 본 방법은 2015년 2월 1일부로 시행한다. 2015년 2월 1일 전 세무기관이 처리∙완료하지 아니한 조세회피조치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  | **一般反避税管理办法（试行）**国家税务总局令第32号　　《一般反避税管理办法（试行）》已经2014年11月25日国家税务总局2014年度第3次局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5年2月1日起施行。国家税务总局局长： 王军2014年12月2日**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规范一般反避税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以下简称企业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以下简称税收征管法）及其实施细则，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适用于税务机关按照企业所得税法第四十七条、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第一百二十条的规定，对企业实施的不具有合理商业目的而获取税收利益的避税安排，实施的特别纳税调整。下列情况不适用本办法：（一）与跨境交易或者支付无关的安排；　　（二）涉嫌逃避缴纳税款、逃避追缴欠税、骗税、抗税以及虚开发票等税收违法行为。　**第三条** 税收利益是指减少、免除或者推迟缴纳企业所得税应纳税额。　　**第四条** 避税安排具有以下特征：　　（一）以获取税收利益为唯一目的或者主要目的；　　（二）以形式符合税法规定、但与其经济实质不符的方式获取税收利益。　　**第五条** 税务机关应当以具有合理商业目的和经济实质的类似安排为基准，按照实质重于形式的原则实施特别纳税调整。调整方法包括：　　（一）对安排的全部或者部分交易重新定性；　　（二）在税收上否定交易方的存在，或者将该交易方与其他交易方视为同一实体；　　（三）对相关所得、扣除、税收优惠、境外税收抵免等重新定性或者在交易各方间重新分配；　　（四）其他合理方法。　　**第六条** 企业的安排属于转让定价、成本分摊、受控外国企业、资本弱化等其他特别纳税调整范围的，应当首先适用其他特别纳税调整相关规定。　　企业的安排属于受益所有人、利益限制等税收协定执行范围的，应当首先适用税收协定执行的相关规定。**第二章 立 案**　**第七条** 各级税务机关应当结合工作实际，应用各种数据资源，如企业所得税汇算清缴、纳税评估、同期资料管理、对外支付税务管理、股权转让交易管理、税收协定执行等，及时发现一般反避税案源。　　**第八条** 主管税务机关发现企业存在避税嫌疑的，层报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以下简称省）税务机关复核同意后，报税务总局申请立案。　　**第九条** 省税务机关应当将税务总局形成的立案申请审核意见转发主管税务机关。税务总局同意立案的，主管税务机关实施一般反避税调查。**第三章 调 查**　　**第十条** 主管税务机关实施一般反避税调查时，应当向被调查企业送达《税务检查通知书》。　　**第十一条** 被调查企业认为其安排不属于本办法所称避税安排的，应当自收到《税务检查通知书》之日起60日内提供下列资料：（一）安排的背景资料；（二）安排的商业目的等说明文件；（三）安排的内部决策和管理资料，如董事会决议、备忘录、电子邮件等；　　（四）安排涉及的详细交易资料，如合同、补充协议、收付款凭证等；（五）与其他交易方的沟通信息（六）可以证明其安排不属于避税安排的其他资料；（七）税务机关认为有必要提供的其他资料。　　企业因特殊情况不能按期提供的，可以向主管税务机关提交书面延期申请，经批准可以延期提供，但是最长不得超过30日。主管税务机关应当自收到企业延期申请之日起15日内书面回复。逾期未回复的，视同税务机关同意企业的延期申请。　　**第十二条** 企业拒绝提供资料的，主管税务机关可以按照税收征管法第三十五条的规定进行核定。　　**第十三条** 主管税务机关实施一般反避税调查时，可以要求为企业筹划安排的单位或者个人（以下简称筹划方）提供有关资料及证明材料。　　**第十四条** 一般反避税调查涉及向筹划方、关联方以及与关联业务调查有关的其他企业调查取证的，主管税务机关应当送达《税务事项通知书》。　　**第十五条** 主管税务机关审核企业、筹划方、关联方以及与关联业务调查有关的其他企业提供的资料，可以采用现场调查、发函协查和查阅公开信息等方式核实。需取得境外有关资料的，可以按有关规定启动税收情报交换程序，或者通过我驻外机构调查收集有关信息。涉及境外关联方相关资料的，主管税务机关也可以要求企业提供公证机构的证明。**第四章 结 案**　**第十六条** 主管税务机关根据调查过程中获得的相关资料，自税务总局同意立案之日起9个月内进行审核，综合判断企业是否存在避税安排，形成案件不予调整或者初步调整方案的意见和理由，层报省税务机关复核同意后，报税务总局申请结案。　**第十七条** 主管税务机关应当根据税务总局形成的结案申请审核意见，分别以下情况进行处理：　　（一）同意不予调整的，向被调查企业下发《特别纳税调查结论通知书》；　　（二）同意初步调整方案的，向被调查企业下发《特别纳税调查初步调整通知书》；　　（三）税务总局有不同意见的，按照税务总局的意见修改后再次层报审核。　　被调查企业在收到《特别纳税调查初步调整通知书》之日起7日内未提出异议的，主管税务机关应当下发《特别纳税调查调整通知书》。　　被调查企业在收到《特别纳税调查初步调整通知书》之日起7日内提出异议，但是主管税务机关经审核后认为不应采纳的，应将被调查企业的异议及不应采纳的意见和理由层报省税务机关复核同意后，报税务总局再次申请结案。　　被调查企业在收到《特别纳税调查初步调整通知书》之日起7日内提出异议，主管税务机关经审核后认为确需对调整方案进行修改的，应当将被调查企业的异议及修改后的调整方案层报省税务机关复核同意后，报税务总局再次申请结案。　　**第十八条** 主管税务机关应当根据税务总局考虑企业异议形成的结案申请审核意见，分别以下情况进行处理：　　（一）同意不应采纳企业所提异议的，向被调查企业下发《特别纳税调查调整通知书》；　　（二）同意修改后调整方案的，向被调查企业下发《特别纳税调查调整通知书》；（三）税务总局有不同意见的，按照税务总局的意见修改后再次层报审核。**第五章 争议处理**　　**第十九条** 被调查企业对主管税务机关作出的一般反避税调整决定不服的，可以按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申请法律救济。　　**第二十条** 主管税务机关作出的一般反避税调整方案导致国内双重征税的，由税务总局统一组织协调解决。　　**第二十一条** 被调查企业认为我国税务机关作出的一般反避税调整，导致国际双重征税或者不符合税收协定规定征税的，可以按照税收协定及其相关规定申请启动相互协商程序。**第六章 附 则**　　**第二十二条** 本办法自2015年2月1日起施行。2015年2月1日前税务机关尚未结案处理的避税安排适用本办法。 |